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3-23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두57893 시정명령등취소
2022두57909(병합)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기영, 김철호, 홍석범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영동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누48443, 2021누5837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제2처분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위반되는지(원고 상고이유 제1점)

하도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제22조 제1항 전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한편, 하도급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되,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되거나 제24조의4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처분사유인 각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원신고가 있는 후 그 중 일부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피고의 심사절차가 종료되었다가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신고에 따라 피고의 심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원신고가 이 사건 제2처분사유인 각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제2처분은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조사개시 대상 거래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두 번에 걸쳐 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원고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두 번에 걸쳐 처분한 것만으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1행위 중 단가 변경 후 서면 미발급행위가 구 하도급법(2016. 3. 29. 법률 제 14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원고 상고이유 제3점)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다가 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시행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5. 10. 5.부터 2019. 4. 30.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당초 금형발주계약서에 첨부한 가구 부품의 단가표와 다른 단가로 가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그 변경된 단가 및 원고와 B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서면을 B에게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추가·변경위탁 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최초 제조위탁 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3행위가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원고 상고이유 제4점)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



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규정하였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5. 9. 30.부터 2018. 7. 31.까지 B에게 가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다음 발주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소위 '프로젝트 네고'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제4행위가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원고 상고이유 제5점)

원심은, 원고가 B에게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여 납품받은 후 2015. 9.경, 2015. 10.경, 2016. 10.경 금형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수정된 내용을 적은 서면을 B에게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하여, 금형수정 요구행위는 하자의 보수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제조위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제조위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제8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지(원고 상고이유 제6점)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B에게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여 납품받은 후 2015. 9.경, 2015. 10.경, 2016. 10.경 금형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금형수정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하여, 금형수정 요구행위는 하자의 보수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제조위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고, 나아가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보일 뿐더러 설령 이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다 해도 시정명령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본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제6행위가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원고 상고이유 제7점)

원심은, 원고가 2015. 12. 31.부터 2017. 11. 11.까지 B에게 가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반품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실제 반품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8. 제5행위가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원고 상고이유 제8점)



원심은, 원고가 2017. 4. 30.부터 2019. 1. 31.까지 B이 납품한 가구 부품에 하자가 있다며 소위 '패널티'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이 납품한 가구 부품에 B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9. 제7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지(원고 상고이유 제9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B에게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해당 금형으로 생산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정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단가를 증액하는 소위 '상각'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부품의 발주를 중단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0. 이 사건 제2처분 중 제9행위에 대한 부분이 중복처분으로 위법한지(원고 상고이유 제10점)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제20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5. 9.부터 2017. 4.까지 B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함에 따라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다음 기준에 제조위탁한 부품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회수한 것으로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급의무를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이므로 하도급법 제20조에 위반되고, 나아가 제9행위 중 일부가 이 사건 제1처분사유로 된 제3행위와 동일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의 과징금납부명령, 지급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에 한하여 이 사건 제2처분의 과징금납부명령, 지급명령 대상으로 삼은 이상, 이 사건 제2처분이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중복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1. 이 사건 각 처분의 지급명령이 위법한지(원고 상고이유 제11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B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피고가 지급명령을 하였다거나, 지급명령의 금액이 위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 인용금액보다 크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지급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지급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2.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본문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피고 상고이유)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하 '통지기간'이라 한다)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고, 제25조 제1항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2015. 9. 30.부터 2020. 3. 31.까지 B에게 제조위탁한 가구 부품을 수령하고도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결과를 B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행위(이하 '제2행위'라 한다)와 관련하여,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불합격 통지를 할 경우에 한하여 통지기간 내에 서면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불합격 통지 없이 통지기간 내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제2행위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제1처분 중 제2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본문, 제25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취지, 특히 원사업자가 통지기간 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실령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본문 후단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추후 미통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기간 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별도로 불합격 통지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불합격 통지 없이 통지기간 내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제2행위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제1처분 중 제2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본문, 제25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천대엽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16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	건	2023누37140 시정명령등취소 2023누37157(병합) 시정명령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기영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영동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누48443, 2021누58372(병합)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두57893, 2022두57909(병합) 판결
변론종결		2023. 9. 7.
판결선고		2023.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21. 5. 18. 의결 B로 한 별지 1 기재 각 시정명령, 지급명령, 과징금납부명령과 ② 2021. 8. 4. 의결 C로 한 별지 2 기재 각 시정명령, 지급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21. 5. 18.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시정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2021. 8. 4. 원고에게 한 별지 2 기재 각 시정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송 전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별지 1 제2항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서울고등법원 판결 중 대법원에서 파기되지 아니한 별지 1 제1, 3항 기재 각 시정명령, 제4항 기재 지급명령, 제5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별지 2 기재 각 시정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환송 후 이 법원에는 파기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중 제2항만이 환송되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환송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가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그보다 직전 사업연도 연간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가구 부품¹⁾ 및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하고,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같은 방법으로 약칭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이고, D는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이다.

원고와 D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업종	연간매출액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원고	가구 제조·판매	96,549	95,420	95,622	111,953	105,463
D	금형·부품 제조	720	2,007	2,412	5,162	6,981

나.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4. 6.경 D과 가구 부품 및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2015. 10. 19. 및 2018. 1. 2. 이를 연장하였다), 개개 가구 부품의 제조와 이를 위한 금형의 제조를 위탁할 때마다 별도의 금형발주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거래'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는 원고가 D에게 가구 부품의 금형을 제조할 것을 위탁하고 D이 이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면 원고는 다시 위 금형을 D에게 임대하여 위 금형으로 가구 부품을 제조할 것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원고는 금형 제조에 필요한 시방서를 D에게 교부

1) 금형을 통해 플라스틱 부품을 제조한다는 점에서 '사출품'이라고도 한다.



하고, D은 이를 기초로 금형을 제작한다.

2) D은 2018. 9. 7.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 원고의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부당 감액 등의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신고'라고 한다).

3) 피고는 D의 신고 내용과 직권으로 인지한 사실을 포함하여 ① 가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급한 서면에 하도급대금을 누락하고, 가구 부품 등을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D에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이하 '제1행위'라 하고, 다른 행위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약칭한다), ② 목적물(가구 부품) 수령 후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행위(제2행위), ③ 가구 부품을 수령한 후 발주 물량 증가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소위 '프로젝트 네고'²⁾)한 행위(제3행위), ④ 금형수정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제4행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제8행위), ⑤ 페널티 또는 반품 명목의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제5, 6행위), ⑥ 상각 방식에 의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제7행위), ⑦ 탈법행위(제9행위), ⑧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⑨ 제조위탁의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다.

4) 피고의 심사관은 2020. 6. 4. 위 ⑧에 관하여는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21. 5.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건절차규칙'이라고 한다)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경고' 처리를 하였고, 위 ④~⑦, ⑨에 관하여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4호 및 제53조의2

2) 원고가 대기업 등으로부터 대량의 프로젝트성 수주를 받아 부품의 발주가 증가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종료' 처리를 하였다.

5) 피고는 2021. 5. 18. ① 제1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또는 구 하도급법(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을, ② 제2행위는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을, ③ 제3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을 각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 하도급법(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별지 1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시정명령을 하였고, 제3행위에 대하여는 별지 1 제4항 기재 지급명령도 함께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 하도급법(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제3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별지 1 제5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6) D은 2020. 8. 10. 피고에게,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종료한 위 ④~⑦ 및 이 사건 원신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⑩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였다.³⁾

7) 피고는 2021. 8. 4. ① 제4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또는 구 하도급법(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을, ② 제5, 6행위가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을, ③ 제7, 8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각 위반하였고, ④ 제9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구 하도급법(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또는 구 하도급법(2015. 7. 24. 법률 제13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구 하도급법(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별지 2 제

3) D은 위 ⑨에 대해서는 재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내지 5항 기재 시정명령을 하고, 제5행위, 제6행위, 제7행위, 제9행위에 대하여 별지 2 제6 내지 9항 기재 지급명령을 하였다(제9행위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5. 10. 28.자 행위에 대해서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제5행위 및 제6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와, 제9행위 중 2016. 7. 24.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별지 2 제10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2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위 제2행위 관련 시정명령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위 ⑩에 관하여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원고의 행위(검사결과 통지의무 위반행위)

원고는 2015. 9. 30.부터 2020. 3. 31.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D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10, 18 내지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통지기간이 도과한 경우 검사 합격 통지를 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에게는 미통지로 인한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을 통해 검사결과를 통지할 것을 강제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피고가 검사결과 통지의무 위반행위(제2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고, 이때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제2항), 이 법원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원고의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환송 후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5. 9. 30.부터 2020. 3. 31.까지 D에게 제조위탁한 가구 부품을 수령하고도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결과를 D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하 '통지기간'이라 한다)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고, 구 하도급법(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나)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본문, 구 하도급법(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취지, 특히 원사업자가 통지기간 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설명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본문 후단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추후 미통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기간 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별도로 불합격 통지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되고, 이 경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하도급법(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 즉 검사결과 통지의무 위반행위(제2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부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16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표현덕

판사 박영욱



별지 1

이 사건 제1처분의 시정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2021. 5. 18. 의결 B

1. 원고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D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단가)을 누락하여 서면을 발급하거나, 하도급대금(단가)을 변경하여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위탁 내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D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D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원고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D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하도급대금 185,951,462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동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5. 원고는 과징금 167,000,000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끝.



별지 2

이 사건 제2처분의 시정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2021. 8. 4. 의결 C

1. 원고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D에게 가구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한 후 금형수정을 추가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추가위탁 내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D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D에게 가구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한 후 일부는 선금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목적물 수령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원고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D에게 가구 부품 금형 제조를 추가·변경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원고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D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후 해당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원고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D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패널티 명목으로 감액한 하도급대금 15,308,843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동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



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7. 원고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D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반품 명목으로 감액한 하도급대금 36,204,083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동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8. 원고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D에게 가구 부품 금형제조를 위탁한 후 상 각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미지급한 금형대금 35,680,535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9. 원고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D에게 회수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51,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10. 원고는 과징금 59,000,000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1. 원고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D에게 2017. 12. 18. 및 2017. 12. 28. 가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취소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16

별지 3

검사결과 통지의무 위반행위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연번	목적물 수령일	품목	하도급대금
1	2015. 09. 30	D2 BACK BRACKET END CAP 등 49개 품목	11,108,480
2	2015. 10. 31	CHB11_SEAT_CORE_ASSY 등 114개 품목	38,954,240
3	2015. 11. 30	CHB08_BACK_FRAME 등 109개 품목	64,810,630
4	2015. 12. 31	D2 BACK BRACKET END CAP 등 325개 품목	291,479,070
5	2016. 01. 31	3단이동서랍 플라스틱상판(DN/DP) 등 315개 품목	171,875,210
6	2016. 02. 29	312_LEG 등 139개 품목	46,754,320
7	2016. 03. 31	CHE06_BACK_SHELL(병원) 등 108개 품목	92,773,077
8	2016. 04. 30	312_LEG 등 101개 품목	67,661,230
9	2016. 05. 31	CHB11_ARMREST_L 등 72개 품목	43,557,644
10	2016. 06. 30	FILE HANGER 파일기둥 등 139개 품목	66,963,810
11	2016. 07. 31	3단이동서랍 플라스틱상판(DN/DP) 등 111개 품목	67,761,390
12	2016. 08. 31	FILE HANGER 파일기둥 등 206개 품목	115,523,534
13	2016. 09. 30	3단이동서랍 플라스틱상판(DN/DP) 등 168개 품목	84,305,150
14	2016. 10. 31	3단이동서랍 플라스틱상판(DN/DP) 등 698개 품목	55,387,926
15	2016. 11. 30	FILE HANGER 디바이더 등 370개 품목	85,307,950
16	2016. 12. 31	FILE HANGER 디바이더 등 465개 품목	160,863,184
17	2017. 01. 31	303_CASTER HOLDER(개선품) 등 190개 품목	92,831,692
18	2017. 02. 28	150_TILT_BODY(미도장) 등 275개 품목	131,109,340
19	2017. 03. 31	CHE04_BACK_SHELL_COVER 등 487개 품목	600,305,760
20	2017. 04. 30	D2 BACK BRACKET(R) 등 285개 품목	253,633,871
21	2017. 05. 31	서랍 전판(소) 등 282개 품목	292,979,043
22	2017. 06. 30	데스크1500 레그프레임 상단가이드 등 185개 품목	243,853,888
23	2017. 07. 31	레일A(170MM) 등 398개 품목	205,219,070
24	2017. 08. 31	CHB11_BACK_FRAME_ASSY(인도) 등 258개 품목	260,064,134
25	2017. 09. 30	책상 LEG 어저스트 하우징(빗각) 등 273개 품목	296,405,753
26	2017. 10. 31	FILE HANGER 파일기둥 등 336개 품목	284,264,399
27	2017. 11. 30	FILE HANGER 디바이더 등 496개 품목	451,555,238
28	2017. 12. 29	FILE HANGER 파일기둥 등 262개 품목	263,417,640
29	2018. 01. 31	CHB11_BACK_FRAME_ASSY(인도) 등 321개 품목	234,575,598
30	2018. 02. 28	책상 LEG 어저스트 하우징(빗각) 등 352개 품목	223,937,170
31	2018. 03. 31	CHE04_LEG(미도장) 등 244개 품목	315,803,177
32	2018. 04. 30	DIECASTING(공용)(미도장) 등 260개 품목	393,333,518
33	2018. 05. 31	CHE04_MAIN_PIPE_CAP-A 등 362개 품목	496,208,163
34	2018. 06. 30	임원테이블 어저스트 등 297개 품목	460,135,820
35	2018. 07. 31	CHB13_ARMREST_L_ASSY 등 144개 품목	354,624,636
36	2018. 08. 31	책상 LEG 어저스트 하우징(빗각) 등 236개 품목	415,419,18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16

37	2018. 09. 30	313_ADJUST_ASSY등 99개 품목	253,640,590
38	2018. 10. 31	CHE04_LEG(미도장)등 234개 품목	284,565,150
39	2018. 11. 30	FILE_HANGER 파일기등등 356개 품목	474,408,835
40	2018. 12. 31	313_ADJUST_ASSY등 306개 품목	456,859,310
41	2019. 01. 31	CHB13_HEAD_사출_ASSY등 369개 품목	493,573,636
42	2019. 02. 28	임원테이블 어저스트등 257개 품목	354,141,040
43	2019. 03. 31	넙비머리 와샤블이 에코신 나사(2종)등 191개 품목	272,142,650
44	2019. 04. 30	데스크1500 레그프레임 상단가이드등 213개 품목	265,834,580
45	2019. 05. 31	서랍 전판(대)등 199개 품목	261,563,090
46	2019. 06. 30	D2 BACK SHELL등 75개 품목	58,365,240
47	2019. 07. 31	313_ADJUST_ASSY등 178개 품목	240,276,560
48	2019. 08. 31	책상 LEG 어저스트 하우징(빗각)등 183개 품목	195,920,250
49	2019. 01. 31	CHB13_HEAD_사출_ASSY등 369개 품목	493,573,636
50	2019. 02. 28	임원테이블 어저스트등 257개 품목	354,141,040
51	2019. 03. 31	넙비머리 와샤블이 에코신 나사(2종)등 191개 품목	272,142,650
52	2019. 04. 30	데스크1500 레그프레임 상단가이드등 213개 품목	265,834,580
53	2019. 05. 31	서랍 전판(대)등 199개 품목	261,563,090
54	2019. 06. 30	D2 BACK SHELL등 75개 품목	58,365,240
55	2019. 07. 31	313_ADJUST_ASSY등 178개 품목	240,276,560
56	2019. 08. 31	책상 LEG 어저스트 하우징(빗각)등 183개 품목	195,920,250
57	2019. 09. 30	책상 LEG 어저스트 하우징(빗각)등 153개 품목	156,308,750
58	2019. 10. 31	D2 SEAT BRACKET등 208 품목	243,520,013
59	2019. 11. 30	책상 LEG 어저스트 하우징(빗각)등 378품목	288,626,136
60	2019. 12. 31	서랍 전판(소)등 430품목	564,429,590
61	2020. 01. 31	책상 LEG 어저스트 하우징(빗각)등 282품목	369,073,104
62	2020. 02. 29	CHB08_BACK_FRAME 등 127품목	70,922,425
63	2020. 03. 31	D2 BACK SHELL 등 162 품목	144,446,860



별지 4

관계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既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감액금지)

-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찾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 ①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제13조 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되거나 제24조의4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 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3(과징금)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시정조치)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



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16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21. 5.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1.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제30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2. 약관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반약관을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신고 사건으로 원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하는 경우
4.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능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0조(경고)

-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2.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 등)

- ① 심사관은 전결로 제46조(심의절차종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심사절차종료를, 제47조(무혐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제48조(종결처리)에 해당한다고 인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16

되는 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를, 제49조(심의중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 등 중지를, 제50조(경고)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제51조(시정권고)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정 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에 해당하고 당해 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기존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경우로서 제46조 제4호(심의절차종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과 제47조(무형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심사관 대신 사무처장이 각각 심사절차종료와 무형의로 전결할 수 있다.

끝.